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관련

주요 개정사항 안내

[개정일 2022. 10. 18.]

개정사유

- ①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굴착기 작업 시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 규정 마련,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소화용기에 대한 안전기준 신설, 생식독성물질 8종을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추가하고,
- ② 사업주가 부담하는 안전조치 의무를 근로자의 안전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합리적으로 완화하기 위하여 일정 요건 충족 시 굴착기를 사용한 인양작업 가능, 고소작업대 사용이 곤란한 경우 근로자의 이동식 크레인(기중기) 탑승 예외적 허용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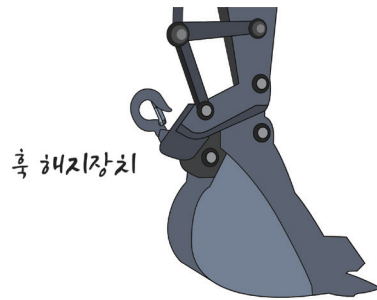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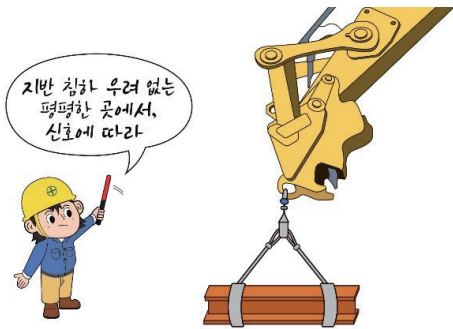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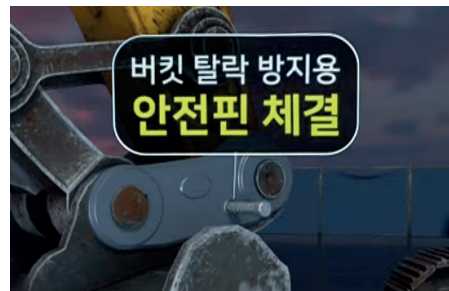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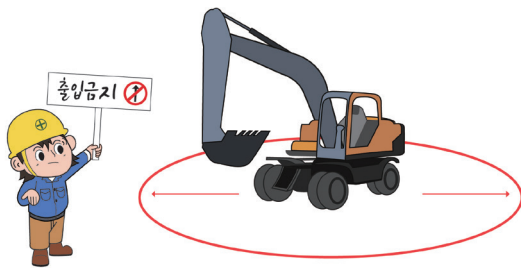
※ 개정 취지 및 개정된 규칙 전문, '부칙'에 따른 조항별 시행일 및 기타 단서 등 자세한 사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검색 후 확인 가능

굴착기 재해예방 관련 안전 규정

굴착기 붐·암·버킷 등의 선회로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는 관계 근로자 외 출입금지 (제20조제18호 신설)

굴착기 관련 안전 규정 정비(제221조의2~제221조의5 신설)

- 충돌위험 방지조치, 좌석안전띠 착용, 작업장치 잠금장치 체결, 인양작업 시 조치 등



※ 굴착기 관련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OPS 참조

이동식 크레인(기중기) 탑승 작업의 예외적 허용(제86조제2항 단서 신설)

고소작업대를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안전기준을 준수하는 경우 기중기를 사용하여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기중기에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에 종사시킬 수 있도록 함

※ 한국산업표준 'KS B ISO 12480-1(크레인-안전한 사용-제1부)' 부속서(C.1 ~ C.4) 및 공단 홈페이지 통합자료실 '기중기 근로자 탑승설비 점검 및 작업안전 가이드' 참조

타워크레인 지지 와이어로프 고정기구 규격 통일(제42조제3항제4호 후단 신설)

타워크레인 지지 와이어로프를 고정시키는 클립·샤클 등의 고정기구의 경우 한국산업표준 제품이거나 한국산업표준이 없는 제품의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규격을 갖춘 제품을 사용하도록 규격 기준 명확화

차량계 건설기계 관련

차량계 건설기계 낙하물 보호구조 용어 및 설치대상 변경(제198조 개정)

구분	용어	설치대상 기계 중 일부	
기존	헤드 가드	셔블	파워 셔블 및 드래그 셔블
개정	낙하물 보호구조	굴착기	스크레이퍼, 덤프트럭, 모터그레이더, 롤러, 천공기, 향타기 및 향발기

차량계 건설기계 종류 추가(별표6 제16호 신설)

- 골재 채취 및 살포용 건설기계(쇄석기, 자갈채취기, 골재살포기 등)

향타기 및 향발기 관련 규정 정비

향타기·향발기 조립·해체 시 안전점검 등(제207조 개정, 제1항 신설)

- 조립 시 준수사항을 해체 시에도 준수하도록 개정
- 조립·해체 작업 시 준수사항* 및 점검사항** 신설

* 권상기에 빼기장치 또는 역회전방지용 브레이크 부착, 권상기의 견고한 설치, 조립·해체 시 제조사에서 정한 작업 설명서 준수 등

** 본체·부속장치 및 부속품의 강도, 본체·부속장치 및 부속품에 심한 손상·마모·변형 또는 부식 여부

향타기·향발기 관련 조항 정비(제207조 ~ 제221조 개정, 일부 삭제)

- 버팀대·버팀줄의 개수, 증기 동력원 관련 규정 등 일부 조항 삭제
- 권상용 와이어로프에 사용하는 클램프, 클립 등의 규격 명확화*
* 한국산업표준 제품이거나 한국산업표준이 없는 제품의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규격을 갖춘 제품 사용
- '각부(脚部)나 가대(架臺)'를 '아웃트리거·받침 등 지지구조물 등'으로 개정하는 등 기타 용어 및 조문 정비

※ 세부사항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편제12절제2관(향타기 및 향발기) 참조

화재감시자 화재 대피용 마스크 종류 명확화(제241조의2 개정)

'방연마스크'를 '화재 대피용 마스크*'로 개정 및 종류 명확화

* 한국산업표준(KS M 6766, 화재용 긴급 대피 마스크) 인증 제품이거나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정하는 기준(비상대피용 자급식호흡기구의 KFI 인정 기준)을 충족하는 것

화염방지기능이 있는 통기밸브 설치(제269조제1항 단서 개정)

제1항 단서에 따라 대기로 연결된 통기관에 '통기밸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화염방지기 설치의 예외를 인정하던 것을 '화염방지 기능이 있는 통기밸브'로 개정

관리대상 유해물질 신규 지정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생식독성물질 8종 추가, 이 중 7종은 특별관리물질로 지정(별표12 개정)

구분	물질명
신규 지정 관리대상 유해물질 (8종) ※ 생식독성물질	별표12 제1호 7) 2-니트로톨루엔(2-Nitrotoluene; 88-72-2)(특별관리물질) 14) 디부틸 프탈레이트(Dibutyl phthalate; 84-74-2)(특별관리물질) 47) 벤조(a)피렌(Benzo(a)pyrene; 50-32-8)(특별관리물질) 66) 시클로헥실아민(Cyclohexylamine; 108-91-8) 88) 와파린(Warfarin; 81-81-2)(특별관리물질) 114) 폼아미드(Formamide; 75-12-7)(특별관리물질)
	별표12 제2호 8) 산화붕소(Boron oxide; 1303-86-2)(특별관리물질)
	별표12 제3호 6) 사붕소산 나트륨(무수물, 오수화물) (Sodium tetraborate; 130-43-4, 12179-04-3)(특별관리물질)

관리대상 유해물질 8종 추가에 따른 조항번호 및 기타 내용 수정(제449조제2항, 별표12)

조항	내용
제449조제2항	별표12 제1호 하위 조항번호 일부 수정사항 반영
별표12	- 관리대상 유해물질 추가에 따른 제1, 2, 3호 하위 조항번호 일부 수정 - 각 호에 명시된 물질을 중량비율 1%이상 함유한 혼합물*에 대한 사항 일부 수정 * 제1호124), 제2호26), 제3호19) 등

※ 조항번호 변경 등 세부사항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2 참조

밀폐공간 상시 가동되는 급·배기 환기장치 설치에 따른 특례(제626조 신설)

밀폐공간에 상시 가동되는 급·배기 환기장치(상시환기장치)를 설치하고 24시간 상시 작동해 질식·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없도록 한 경우 해당 밀폐공간에 대하여 아래 조항(표)을 적용하지 않음

- 사업주는 상시환기장치의 작동 및 사용상태와 밀폐공간 내 적정공기 유지상태를 월 1회 이상 정기점검 실시 (이상 발견 시 즉시 필요한 조치 실시)
- 사업주는 위 점검결과(점검일자, 점검자, 환기장치 작동상태, 적정공기 유지상태 및 조치사항)를 해당 밀폐공간 출입구에 게시

조항	내용
제619조제2항	밀폐공간 작업 시작 전 확인사항* * 작업정보, 작업자정보,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결과 및 후속조치사항, 보호구, 비상연락체계 등
제619조제3항	작업장 출입구에 제2항에 따른 확인사항 게시
제620조	밀폐공간 작업 시 환기 등을 통한 적정공기 상태 유지
제621조	밀폐공간 작업 시 출입인원 점검
제623조	밀폐공간 작업 시 밀폐공간 외부 감시인 배치 등
제624조	산소결핍 또는 유해가스 중독으로 추락 우려 시 안전대, 송기마스크 등 지급
제640조	6개월에 1회 이상 구조훈련 실시

단, 아래의 밀폐공간은 위 상시환기장치 설치에 따른 특례 적용 제외

적용 제외대상	적용 제외대상 밀폐공간 정의
별표18 제10호	간장·주류·효모 그 밖에 발효하는 물품이 들어 있거나 들어 있었던 탱크·창고 또는 양조주의 내부
별표18 제11호	분뇨, 오염된 흙, 썩은 물, 폐수, 오수, 그 밖에 부패하거나 분해되기 쉬운 물질이 들어있는 정화조·침전조·집수조·탱크·암거·맨홀·관 또는 피트의 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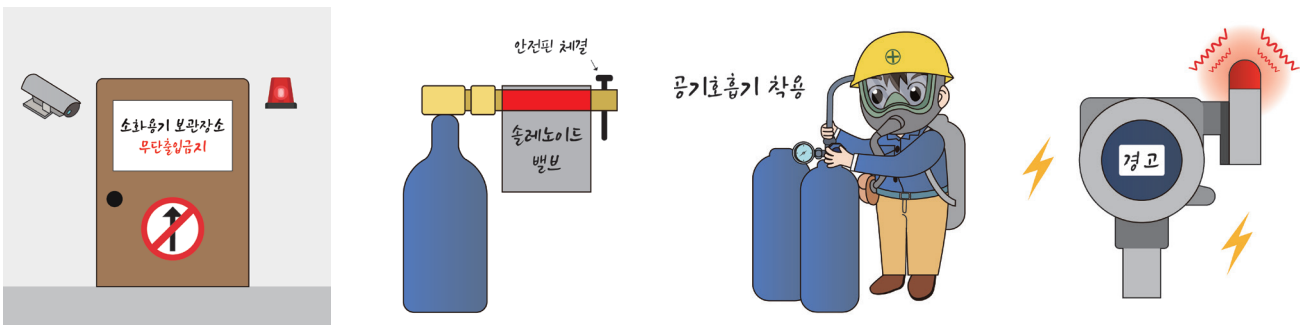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소화용기에 대한 조치

이산화탄소 사용 소화기 규정 정비(제628조 개정)

- '소화설비 등에 대한 조치'를 '이산화탄소를 사용하는 소화기에 대한 조치'로 명확화

이산화탄소 사용 소화설비 및 소화용기에 대한 조치(제628조의2 신설)

- 출입금지, 작업자 지정 및 출입기록 관리, 방호구역등 출입 시 조치사항, 소화설비 임의작동 금지, 산소 또는 이산화탄소 감지 및 경보장치 설치 등



※ 자세한 사항은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소화용기 관련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OPS 참조